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 관련 주요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신규로 시행되는 각종 농업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월간 한농연' 1월호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해설 기사를 싣는다.

- 편집자 주 -

## ● 농업정책 일반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하던 것을 63세 이상 69세 이하의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변경된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1ha당 24만 1,000원을, 임대하면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한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 = 정부는 농가당 지급면적이 지난해 최대 3ha에서 올해는 4ha로 상향조정되었다. 하지만 논농업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ha당 진흥지역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 43만 2,000원을 지급한다.

▲지역별 벼 수매품종 제한 =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정부는 시 군별로 선정된 3개 내외의 품종만 수매할 방침이다. 조곡공매는 품종별 등급별로 실시하며 학교급식용이나 군관수용 등도 단일품종으로 공급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개선 = 경영 우수 미곡종합처리장 및 구조조정 추진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며,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포장양곡표시제 개선 = 포장양곡의 표시사항에 생산연도 중량뿐만 아니라 품종 도정연월 일 등급 등을 추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규모 통합 = 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며, 10ha 및 10농가 이상일 때는 2억~1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농가부채 경감대책 =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5년 거치 후 15년 분할 상환하면 되고 금리는 3%에서 1.5%로 인하한다. 또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 금리도 6.5%에서 3%로 인한다. 그러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경우에는 대출 잔액의 10%를 매년 상환해야 금리인하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특별법이 작년 12월 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되었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지연을 이유로 아직껏 법안 및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국회비준이 무산될 경우, 관련 예산을 재해 예비비 등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농연은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금리 인하 조건인 대출 잔액의 10% 매년 상환 조건을 삭제해 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올해부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지방세 감면 =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660㎡(200평), 주택면적 150㎡(45평) 이내의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어촌복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지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업인이 0~5세 자녀를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며 최고 13만 1,000원까지 지원한다(월평균 10만 2,000원 수준). 이 사업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 지연을 이유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지난해 12월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농어업인의 부담이 준다. 납입 건강보험료의 30%가 지원돼 평균 1만2,750원의 경감 혜택을 본다. 이 제도 또한 한-칠레 FTA 국회비준 지연을 이유로 법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2004년 1학기부터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

금 무이자 지원 제도가 개편되어, 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된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 사업 지역 확대 = 그동안 제외됐던 경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 = 농촌 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9개도에 디지털 사랑방(인터넷 이용 환경 위성 TV 홈페이지 구축 등) 20곳을 설치하며, 한 곳당 3,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침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품질고급화장려금 도입 = 올해 7월 1일부터 육질 기준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거세 한우는 한 마리당 20만~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육우는 한 마리당 10만원이 지원된다.

소독 설비의 설치기준 및 위반시 처분 강화 = 올해부터 집유장 사료업체 종축장 부화장 비료업체도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반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광우병검사 시스템 개선 = 이르면 올 하반기에 종전의 모니터링 위주로 한 연간 1,000건의 검사와 병행해 규제검사가 실시된다. 규제검사는 양 사슴 각 50마리씩, 소는 의심우 전 마릿수에 대해 실시된다.

**축산정책**

▲축산업 등록제 도입 = 등록 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과 사육시설면적이 소 닭은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축산농가이다. 정부는 부화업과 종축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란집하업은 2004년 6월 26일, 가축사육업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할 방침이다. 등록과 관련한 필요설비 설치지원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은 1억원을, 가축사육농가는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하고 2004년 3월 말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사육농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시범 도입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

**농산물유통**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 = 정부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 수질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인삼 품질관리 강화 및 불법유통 근절 = 검사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 조치를 취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한다. 수거 검사 등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확대 = 농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안전 위생 식품위생의 확보와 규격화 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 검사 등 관련 정보 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우수농산물수출 지원조건 개선 = 우수농산물 지원 단일 항목으로 지원되며, 제재 조치도 강화된다. 수입국의 안전성 규정 위반 등도 관련 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간주돼 제재를 받는다.

### 농촌개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을 신규 취득,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 받지 않게 된다. 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 받지 않는다.

▲경지정리사업 추진 방식 변경 =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봄에 1,000ha가 추진된 뒤 중단한다. 하지만 5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 권역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리고 전통 문화 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권역당 70억원 가량

이 보조된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운용 = 저수용량 300m<sup>3</sup> 이상 저수지는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하고, 300m<sup>3</sup> 이하는 시설관리자(시·도)가 계획을 세운다.

### 농기자재

▲퇴비의 수분규격 및 유기질 비료의 유해성분 기준 신설 = 수분함량 등을 중심으로 등급이 세분화된다. 수분규격은 일반퇴비가 50% 이하, 그린퇴비는 45% 이하이다. 또 유기질비료와 일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현행퇴비의 유해성분 기준이 적용된다.

▲로테르담협약 발효에 따른 위해농약의 수출입 사전 승인제 도입 = 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입 제한 처분한 농약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 = 농약관리법이 개정돼 천적 등을 포함한 생물농약 기준이 신설되며, 미생물농약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이나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고, 천적은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에 기생하거나 포식하는 동물이다. 인물권

(자료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농민신문)